

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☐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과
선배·동료의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

새정치민주연합
김영한 의원 입니다.

- ☐ 금번 제25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
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
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.
- ☐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조
례 조문 중 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
사항입니다.

잘 아시다시피, 우리는 쉽고 좋은 한글을 가지고도 한자
어로 표현된 경직된 문장이나, 용어와 표현이 이해하기
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.

□ 따라서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
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, “경과”을 “지난”으로 하고, “준치”를 “보존”으로 하며, “이차보전”을 “이자 차액의 보전”으로 하는 내용입니다.

□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